

# 일제 강점기 서울지역 장묘시설 연구

이숙미\* · 오충현\*\*

\*동국대학교 대학원 환경생태공학과 · \*\*동국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 I. 서론

도시의 한정된 토지자원을 관리함에 있어 장묘시설은 중요한 토지 수요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장묘시설은 시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시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늘어나는 화장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2001년부터 서울시에서 서초구 원지동에 화장시설을 설치하려고 준비해왔고 이 지역주민들의 심한 반발로 곤란을 겪어 오고 있는데,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화장시설을 설치하도록 입법됨에 따라 더 많은 지역에서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아직 도시화가 되기 이전, 전통적인 장례풍습이 있던 과거에는 장묘시설에 대한 도시 관리 차원의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근대화와 함께 도시의 인구집중이 진행되면서 장묘시설의 적정한 공급과 시설부지 선정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도시지역의 장묘시설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근대화 과정에서 장묘시설이 도입되게 된 원인과 현황, 문제점 및 그 해결방법 등을 고찰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근대묘지로의 전환기인 일제 강점기의 서울을 대상으로 공동묘지, 화장장 등의 장묘시설의 현황을 조사하고, 당시 장묘시설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우리나라 도시지역 장묘시설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II. 연구범위와 방법

### 1. 연구대상지 및 범위

본 연구는 서울지역을 연구 대상지로 하고, 일제강점기 직전부터 일제강점기 동안의 약 50년간을 조사하였다. 다만 일제 강점기 서울지역의 경우에도 오늘날의 서울시와 같이 서울지역 경계 밖의 경기도 지역에 다수의 장묘시설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서울지역민들이 사용하던 서울 인근 경기도 지역까지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 2. 조사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일제강점

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조선총독부가 장묘시설을 관리했으므로 조선총독부의 관보와 내부 서류 등의 기록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으며, 매일신보, 동아일보 등 당시 기사 자료와 시대별 지도 자료도 활용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장묘시설의 종류

수집된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일제 강점기 장묘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었다. 이중 사유묘지를 제외한 장묘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1) 사유묘지: 개인묘지, 가족묘지, 문중 및 종중 묘지
- 2) 공동묘지: 국가와 관 또는 단체가 관리하는 집단 매장지, 중국인 · 일본인 · 기타 외국인 공동묘지로 구분됨
- 3) 화장장과 장재장(葬齋場): 경성부에서 관리하는 부영 화장장과 사설 화장장으로 구분됨
- 4) 납골당: 장재장에 속한 납골당
- 5) 기타: 천주교 등 종교단체의 묘지, 수인(囚人)묘지, 육군 묘지 등

### 2. 장묘시설의 변천

#### 1) 조선시대의 장묘시설

최근 발굴된 은평구 진관외동의 은평 뉴타운 예정지와 중랑구 신내동 신내 택지지구의 공동묘지는 조선시대의 것으로 밝혀졌으나, 문헌자료와 이전의 어떤 연구에서도 일제강점기 이전까지는 국가나 관에서 경영 · 관리하는 공동묘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장(喪葬)에 대한 예가 육전에 실려 있는데, 오직 장사하는 무덤(葬墳)의 제도만 정한 것이 없고(태종실록, 1410년), 분묘는 구역을 정하고 그 안에서 땅을 일구거나 짐승을 치는 것과 같은 짓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윤국일, 2005).

조선시대 서울의 매장지 설정기준은 4가지의 금장(禁葬) 즉 묘지로부터의 금장, 용호 양산처(龍虎 養山處)로부터의 금장, 인가 100보로부터의 금장, 도성(都城) 및 성저십리(城底十里)

내의 금장이었다(和田一郎, 1967).

## 2) 일제 강점 직전의 장묘시설

### (1) 일본 거류민단 묘지와 화장장

1876년 ‘조·일 수호조규’를 맺음으로써 일본은 일본인 묘지를 인정받았고<sup>1)</sup>, 이후 일본인 거류민단 소관의 묘지가 만들어졌는데, 1906년에 당시 학교직원의 사택지였던 경성부 삼판통 1, 2번지와 그 부근 갈월리에 3,067평을 일본인에게 요금을 받고 대여하였으며, 1914년 3월 31일 민단이 해체할 때 함께 폐지되었다. 1913년에는 총독부로부터 받은 광희문밖의 신묘지 118,600여 평과 마포 봉학산의 만리현 신묘지 41,400여 평은 두 곳에 있는 화장장과 함께 경성부에 인도되어 경성부 소관이 되었다(경성부, 1936).

### (2) 기타 외국인 묘지

현재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144번지에 있는 서울 외국인 묘지공원은 양화진 선교사묘지로도 불리고 있는데, 1890년 7월 26일 미국인 의료선교사 알렌이 사망하면서 미국공사의 요청으로 그 해 7월 28일 묘지 허가를 받게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 외에 중국인이 경영하는 외국인 묘지가 이태원에 있었고<sup>2)</sup>, 프랑스 성직자 묘지는 현재의 천주교 용산성당에서 1890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 3) 일제강점기

일본은 이미 한일합방조약 이전 한국의 지배를 염두에 두고 토지침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시작하여 합방 이후 식민지 지배 정책 사업으로 토지조사를 시행하였다. 이 사업으로 국유지와 철도부지, 민간 소유 토지 등을 무상약취하여 일제의 소유지로 개편하고 또 동양척식회사를 통해 아주 일본인에게 할값에 토지를 불하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산지 등 곳곳에 흩어져 있는 묘지들이 문제가 되어 일본인이 만든 상업회의소 연합회에서는 묘지구역규정법안을 발표 실시해 달라는 청원을 하기에 이르렀다.

#### (1) 1910년대

조선총독부는 칙령 제357호로 1910년 10월 1일 지방관제를 개혁하면서 한성부를 경성부로 개칭하고 경기도 소속으로 격하시켰으며, 1914년에는 원래 한성부 소속의 많은 지역을 고양군에 편입시키면서 관할구역이 대폭 축소된다.

1912년 6월 20일에는 조선총독부령 제123호에 의해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 취체규칙(이하 “묘지규칙”이라고 한다.)이 발포됨으로써 최초의 관영 공동묘지가 세워지게 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대로 이 규칙은 단지 토지 침탈을 용이하게 하여 식민지 지배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일 뿐으로 한국인<sup>3)</sup>들의 관습과 문화를 무시한 조치였고, 아직 일본에서도

표 1. 경성 5부 매장지

(단위: 평)

위치	면적
동부 송신면 미아리	51,555
서부 연희면 신촌	36,241
남부 두모면 수철리	110,126
중부·남부 은평면 말현산	81,075
합계	278,997

도시계획법이 제정되기 이전이었으므로 마스터플랜 없이 진행되어 무리가 따랐다. 이후 조선총독부는 같은 해 10월 다음과 같은 시구개정(市區改正)에 대한 훈령 제9호를 시달하였는데, 일본이 동경의 시구개정을 위해서는 2년간의 조사와 검토 결과, 구체적인 개정계획과 도면, 참고도표까지 첨부한 데 비해, 일체의 설명이 결여되어 있는 단 세 줄의 훈령으로 국가의 수도였던 서울의 시구개정을 규정지었던 것은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에 대한 차별이었다고 보았다(손정목, 1990). 이어 1913년 4월 1일부터는 이 규칙에 따라 경성 5부의 매장지를 선정하였고(표 1 참조), 다시 그해 9월에는 경성부에 신설될 공동묘지 19개소를 발표하였다.

도시나 마을 부근에 북망산 또는 무주공산이라 부르는 국유림의 일부에 선산을 가질 수 없는 빈민들이 매장을 하기 시작해 자연스럽게 공동묘지가 된 곳이 한 두 곳 있었고(탁지부, 1909), 1917년 통계자료에 전국의 공동묘지가 약 2만 5천 개소이며, 면적은 약 420만평에 이르고 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조선시대에 공동 매장지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으나, 관에서 관리하는 공설묘지의 성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17년 경성부 총면적 6,443,380.9평 중 분묘지는 표 4와 같이 7,885평으로 지적상 관내의 묘지는 용산지역만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표 2 참조).

그러나 묘지규칙이 시행된 지 불과 4개월여 만인 1914년 1월

표 2. 분묘 소재지

(단위: 평)

동명	1917년	1927년
도화동	6,838	6,654
산천동	364	-
청파동2가	229	-
청암동	223	223
동자동	148	-
후암동	50	50
갈월동	35	-
합계	7,885	6,927

자료: 강병식, 1992

부터 공동묘지에 대한 민원이 창천하는 내용의 기사들이 나오고, 1917년에는 묘지규칙을 위반한 건수가 약 2,500건, 1918년에는 약 3,000건에 육박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묘지규칙에 대한 불평이었음은 동년 6월 각도(各道)의 일본 현병대장·경무부장 연석회의에서 보고 형식으로 제출된 보고서 내용으로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에는 각도의 불평사항과 희망사항 중 묘지규칙에 대한 내용이 거의 빠지지 않고 있다. 한국인은 묘지규칙을 고래의 관습을 무시한 악제라고 여기고 있고, 현병대장의 의견 중에서는 공동묘지의 위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어 묘지규칙의 개정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묘지규칙은 1918년과 1919년 개정되어 사설묘지를 완화하였으나, 일반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닌 선산 등 의 사유지를 가진 자에게만 혜택이 가는 개정이었으며, 빈민 중에는 공동묘지 사용료조차 부담이 되어 암장하는 일도 있었다.

## (2) 1920년대

1920년에 일본은 도시계획법을 시행하는데, 이 영향으로 경성부에서도 1921년에 경성도시계획연구회가 창립되어 도시계획의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도시계획이 실행되기도 전인 1921년에 경성부는 한국인 공동묘지에 관한 사무를 내무과에서 위생과로 이관하고 실지 답사완료 후 다음 해부터 정리에 착수할 계획을 했으며, 공동묘지가 신설된 지 채 10년도 되지 않은 1922년에는 공동묘지가 만원이 되어 새로운 묘지를 설정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내선 차별은 묘지에도 적용되어 도심부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의 편의를 위해 근거리에 일본인 묘지를 정했는데, 실제로 거류일본인 중에는 경성에 묘지를 사용하는 수는 매우 적어서<sup>4)</sup> 아현리와 신당리의 일본인 전용 묘지는 사용 가능한 면적이 많지만, 도시가 발전하게 되면서 그 위치가 부적당하여 이전이 필요했고, 새로이 홍제내리에 준비 중인 신묘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조건이 좋은 곳으로 공원묘지를 설치하여 인간 최후의 영원한 휴식을 취할 완전한 묘지로, 반면 동소문의 한국인 묘지는 보통공동묘지로 만들었다.

또한, 부립 홍제내리 화장장에는 만 3년간 1원의 요금으로 유골을 보관할 수 있는 납골당이 있었다<sup>5)</sup>.

1920년대 말에는 서울의 총면적 10,629,500평 중 묘지가 558,086.6평이었는데,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선정된 신당리와 한강리의 분묘지로 사용되던 토지를 주택지와 도로부지로 사용하려는 토지이용계획을 세웠고(표 3 참조), 인접면을 편입할

표 3. 경성부 도시계획 구획정리지역 중 분묘지의 이용계획

(단위: 평)

위치	분묘지(198,106)		
	주택예정지	주택불능지역	도로부지
신당리(732,734)	161,765	24,645	11,696
한강리(704,360)	52,305	32,326	5,715

계획을 하면서는 1920년대 초부터 묘지가 부족하여 불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묘지수요에 따른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화장을 장려하여 인접면을 포함한 총 묘지면적 100만평을 현상유지하거나 묘지가 필요하면 부외의 지역에서 구하는 방책을 쓰려고 했다.

## (3) 1930년대

'조선시가지계획령'이 1934년 6월 20일에, 시행규칙이 이어서 7월 27일에 발포되면서 서울의 도시계획이 시작되었다. 1936년 2월 14일에는 1914년부터 20여 년간 변함없던 경성부의 관할구역이 대폭 확장되었는데, 이 때 편입된 지역은 고양군, 시흥군, 김포군 등 3개 군 관내 1읍 8면 71동리와 5개리의 일부에 걸친 광대한 면적이었다. 면적은 확장 전보다 4배 가까운 넓이가 되었고, 인구도 1935년 말의 394,911인에 비해 대폭 증가하여 1936년 말에는 636,955인으로 늘어났다.

식민정책의 하나로 시행된 '묘지 화장장 매장과 화장 취체규칙'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발로 1919년 묘지규칙이 개정되면서 공동묘지의 총 개소수는 크게 변화가 없으나, 사유묘지가 크게 증가하였다(표 4 참조).

이 시기에 공동묘지와 관련된 두드러진 사회현상 중에는 도시빈민인 토막민의 문제였다. 토막민은 대부분 공동묘지가 자리 잡은 지역 또는 바로 공동묘지 내에 토굴과 토막촌을 형성하였고, 이들이 거주한 곳에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개발상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다시 이주한 지역 또한 공동묘지가 있는 지역이었다. 이처럼 이주비가 없어 이주가 힘든 토막민들은 공동묘지에서 공동묘지로 이동하며 촌락을 만들게 되어 지속적인 사회문제가 되었다<sup>6)</sup>.

1939년에 경성부의 부유 공동묘지는 17개소였고, 그 중 1936년 부역 확장시에 인근읍면으로부터 인계받은 12개소는 매장여지가 없고, 이들 묘지 부근은 도시발전과 함께 점차 시가지를 형성할 것이므로 묘지로는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광주군 언주면에 약 10만평 부지를, 시흥군 동면에 약 11만평 부지를 매수하여 묘지를 설정하기로 하며, 옆리 공동묘지는 대현토지구획정리지구에 편입되어 경성부 도시계획과에서 개장을 계획한다.

이 당시에 이미 화장로가 20기나 되는 장재장 시설이 있었으나, 시설이 노후하고 화장건수가 증가하여 개축을 실시하기로 하며<sup>7)</sup>, 1936년 2월에는 경성부로 편입된 구 영등포읍 화장장의 명칭을 경성부화장장으로 하고 위치는, 시흥군 동면 구로리로 정하였다.

표 4. 묘지수의 변화

	공동묘지			사유묘지		
	신설	폐지	총묘지수	신설	폐지	총묘지수
1910년대	8,602	767	25,104	99	1	136
1930년대	-	-	25,351	-	-	86,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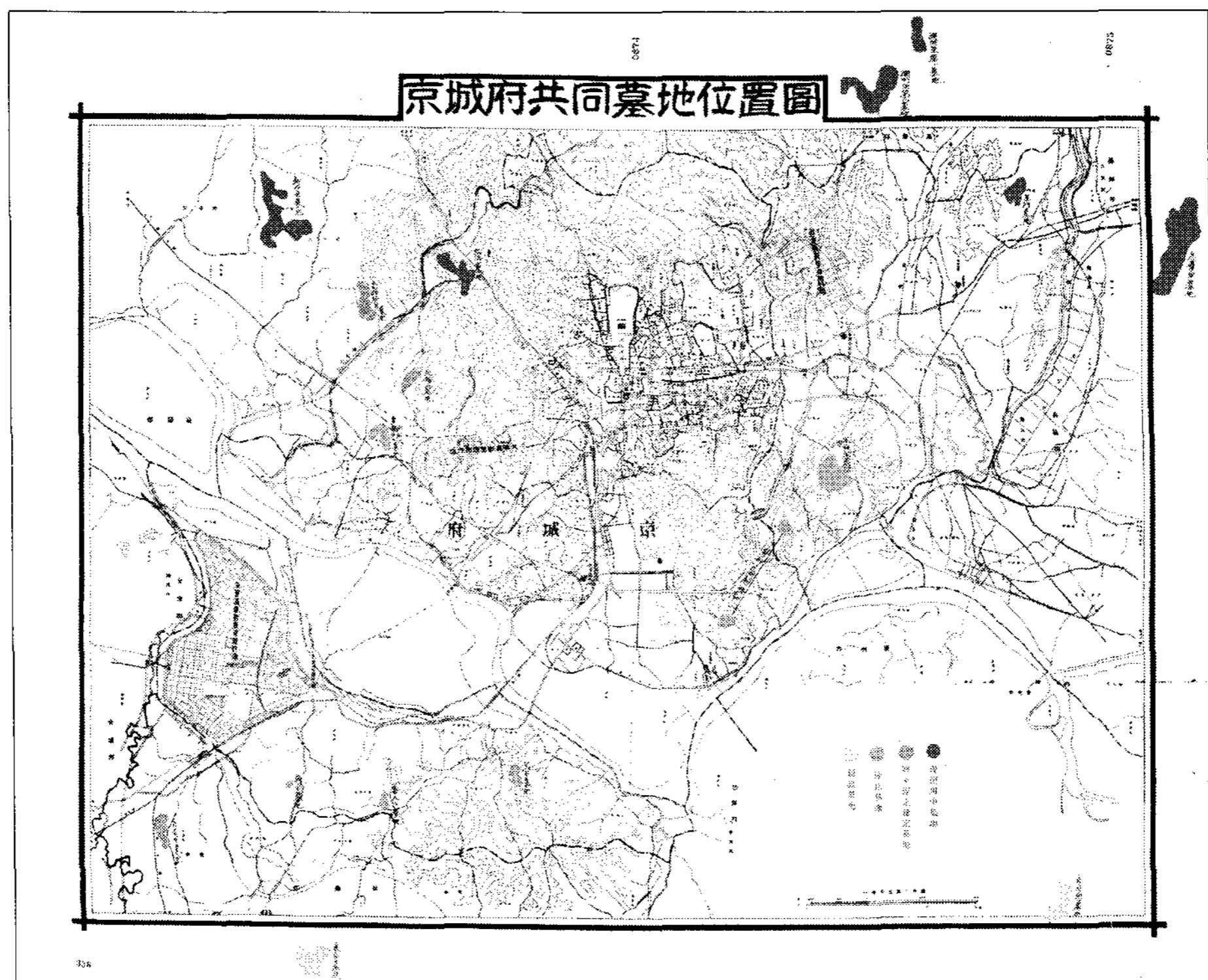


그림 1. 1941년도 경성부 공동묘지 위치도

자료: 경성부, 1941

표 5. 1936년 묘지 화장장 일람표

경성부	번호	종 별	묘지명	소재지
재래 묘지	1	내선인	경성부 홍제묘지	경성부 홍제정
	2*	조선인 공동 묘지	경성부 이태원제1묘지	경성부 이태원정, 보광정, 한남정
	3		경성부 수철묘지	경성부 금호정
	4		경성부 망우리묘지	양주군 구리면 망우리, 고양군 뚝도면 면목리
	5		경성부 미아리제1묘지	고양군 송인면 미아리
	6		경성부 미아리제2묘지	고양군 송인면 미아리 길음동
	7		경성부 신사리묘지	고양군 은평면 신사리
신편입 묘지	8**		경성부 이태원제2묘지	경성부 보광정, 한남정
	9		경성부 이문묘지	경성부 이문정
	10**		경성부 동교제1묘지	경성부 동교정, 연희정
	11**		경성부 동교제2묘지	경성부 동교정
	12**		경성부 염리묘지	경성부 염리정
	13		경성부 연희묘지	경성부 연희정
	14		경성부 남가좌리묘지	고양군 은평면 남가좌리
	15		경성부 흑석묘지	경성부 흑석정
	16		경성부 번대묘지	경성부 번대방정
	17		경성부 신길묘지	경성부 신길정
	18		경성부 구로리묘지	시흥군 동면 구로리

\*: 1935년 4월 매장 정지

\*\*: 1937년 4월 1일 아래 매장 정지

#### (4) 1940년대

1941년 묘지 개장과 장재장 신설 사업을 계획하고, 경성부묘지통제계획에 따라 도심부로부터 방사선상의 원격지 5개소 즉 시흥군 동면, 광주군 연주면, 고양군 은평면 신사리, 고양군 숭인면 미아리, 양주군 구리면 망우리로 통제하여, 이외의 묘지들은 순차적으로 폐지시킬 것을 계획하였다(그림 1 참조).

당시 서울에는 화장장이 홍제내리의 장재장과 경성부 화장장 2개소가 있었는데, 1929년 30만 인구시대에 준공한 것이므로 인구의 증가와 화장의 급격한 증가로 당시 홍제정 화장장 19기의 화장로 설비로는 도저히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망우리 묘지 부지 내에 화장로 10기의 장재장을 신설하기로 계획을 하고, 장래 100만 인구 시대를 대비하여 홍제내리 19기, 동부의 망우리 15기, 남부인 시흥 15기를 계획하여<sup>8)</sup>, 망우리 묘지 내 장재장은 설계도까지 첨부하여 사업계획을 하였으나 실행되지 못하고 홍제내리 화장장만이 1960년대 말까지 남아서 고양군 벽제면 대자리로 옮기게 된다.

## V. 결론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선산이 있는 사람은 선산에, 자기 땅이 없는 서민은 마을에 있는 공동 매장지에 매장을 해왔다. 묘지와 관련된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었지만, 1910년 한일합방으로 식민 지배가 시작되면서 피지배국의 수도는 그 지위가 격하되어 수도로서의 도시계획 없이 1912년 묘지규칙으로 매장관

습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일은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반발을 야기하였다.

공동묘지제도는 표면적으로는 위생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실질적인 목적은 식민지 개발을 보다 수월하게 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일시에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무시한 채 시행하게 되어 묘지의 위치 선정과 수요 예측이 어렵게 되었다. 일본인 전용 묘지는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넓게 자리 잡았으나 이용률이 낮은데다 도시개발에 장해가 되어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한국인 묘지는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적어, 신설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만장이 되어 매장이 금지되고 개장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또한, 피지배자에 대한 차별로 인해 일본인 전용묘지나 화장장은 시설도 제대로 갖추고 쾌적한 고급 시설이었고, 한국인용은 고인에 대한 예의나 유족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저급한 시설이었다. 또한, 일본의 식민지 정책으로 일반인들이 빈민이 되어 이리 저리 쫓겨 다니다 공동묘지 주변에 토막을 짓고 사는 토막민으로 살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공동묘지는 조상을 모시는 경건함이 배제된 공간이고, 빈민의 거주지이며 또 도시개발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멀리 해야 한다는 개념이 자리잡게 되었다.

장묘시설은 인류가 살아있는 한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며, 접근성이 좋아야 이용률이 높아진다. 반면, 거주지역과 너무 근접하게 위치하는 것 또한 선호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장묘시설은 시민의 관습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 시설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와 시설을 갖추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곳은 과거 어느 시대에는 묘지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누군가의 주거지였을 땅에 장묘시설을 두고 있을 수도 있다. 현재의 장묘시설도 시간이 흐르면 주택 등 다른 용도로 변화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현재의 주거지역이 미래에는 장묘시설로 사용될 수도 있다. 다만 장묘시설로 유지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이용이 너무 급격하게 변화하여 시설을 자주 이전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에게나 불편한 일이다. 또한, 100만 미만의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장묘시설만으로도 힘들어했던 일제 강점기에 비해 현재의 서울의 인구는 당시로서는 상상을 할 수도 없었던 1,000만 인구로 증가하여 여전히 부족한 장묘시설로 고민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장묘제도만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거울삼아 산 자와 죽은 자의 공간을 분리하려 하기보다는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합리적인 장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2007년 12월 24일 입법예고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안에는 지자체별 화장시설 설치의무 규정에 지역별 인구, 사망자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 화장로 설치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제 장묘시설을 협오시설로 여기는 넘비(NYMBY) 현상을

뛰어넘는 인식의 전환뿐만 아니라 지자체 내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실천하는 복지시설 중의 하나로서 지자체의 수요에 맞고 지자체별 지역주민의 요구 및 환경에 적합한 장묘시설을 디자인하고 실천할 단계에 온 것이다.

- 주 1. 조·일수호조규부록 제6조 일본인묘지를 인정할 것.  
주 2. 1927년, 1932년 경성도시계획자료조사서에는 이태원에 지나인이 경영하는 외국인공동묘지의 기록이 있으나, 1934년 자료부터는 기록에서 빠져 있다.  
주 3. 1909년까지 일본에 의해 발행된 자료에는 ‘한국’과 ‘한국인’이라 표현하다가 한일합방 이후 ‘조선’과 ‘조선인’으로 격하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한국인’으로 표현했으며, 단 인용한 표에서는 원문을 따랐다.  
주 4. 경성도시계획조사서(1927)에서 1925년 말 일본인 인구는 84,000여 명에 1914년부터 1925년까지 매년 사망자의 평균이 3,000여명인데, 신사리 묘지는 1927년 말에 1,073기(한국인 포함), 아현리 묘지는 449기로 조사되고 있어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화장 후 본국으로 보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주 5. 경성부고시 제25호와 25호로 최초의 납골당에 대한 규정을 제정·공포했다.  
주 6. 동아일보 1934년 3월 18일자 기사에는 경성부근에 있는 토막민 촌락을 7개소로서 아현리 1개소, 신당리 2개소, 도화동 2개소, 청연정 1개소, 봉래정 1개소 등이고, 토막민의 호수는 1,538호며 인구의 총수는 6,913명에 달하는데 경성시내에 산재한 토막민들은 거의 전부를 조사하는 대로 아현리 토막촌으로 몰아버리기로 하고 계속하여 3개년 동안 500호씩을 이전시킬 작정이라 하였으며, 조선중앙일보 1935년 12월 1일자에는 구축당한 토막민들 용강면 염리 공동묘지에 벌써 45호가 정착했다고 하였다.  
주 7. 서류상 1930년대에는 20기, 1940년대에는 19기, 일부 자료에는 18기로도 나오는데 노후되어 개축하는 과정에서 화장로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1930년대 말 인구 77만 명에 13,875건과 비교해 보면, 당시에도 화장로 부족으로 화장장 신설을 계획했으나, 현재 서울시립승화원의 화장로는 23기이며, 2007년 한 해 동안 화장수는 인구 약 1,000만명에 28,148건으로, 약 70년이 지난 현재에도 시설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주 8. 조선총독부내부서류 중 1941년 5월 23일 부내 제 71호 묘지 개장비와 장재장 신설비 충당용 기채를 얻기 위해 작성한 묘지와 화장장에 대한 기록과 묘지의 위치도를 첨부하여 통제계획을 알 수 있다.

## 인용문헌

1. 강병식(1992) 일제하 서울(경성부)의 토지 조사와 토지소유 실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 경성도시계획조사부(1928) 경성도시계획조사서.
3. 경성부(1927) 경성도시계획자료조사서.
4. 경성부(1928) 경성휘보 9월호.
5. 경성부(1932) 경성도시계획자료조사서.
6. 경성부(1934) 경성부행정구역확장조사서.
7. 경성부(1936) 경성부사 제2권.
8. 경성부(1939) 경성부도시계획요람.
9. 경성부 위생과(1928) 경성부위생시설개요.
10. 손정목(1990)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연구. 서울:일지사.
11. 손정목(1996) 일제강점기 도시사회상 연구. 서울:일지사.
12. 윤국일(2005) 신편 경국대전. 서울:신서원.
13. 조선총독부(발행년불명) 경성도시계획구역설정서.
14.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조선주차헌병대사령부 공편저(1915) 경찰통계.
15.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조선주차헌병대사령부 공편저(1916) 경찰통계.
16.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1919) 조선토지조사사업보고서.
17. 탁지부(1909) 토지조사참고서 3호.
18. 白石保成(1918) 朝鮮衛生要義
19. 小串政次(1935) 朝鮮衛生行政法要論.
20. 和田一郎(1967) 朝鮮土地地稅制度調査報告書. 東京:宗高書房.